

#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혜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18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의자 : 강혜순, 김태욱, 문희성,  
김도운, 안영호, 문기호,  
홍영진, 박경흠, 이명녀,  
정재환

## 1. 제정이유

교통질서 확립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구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원 (안 제3조~제4조)
- 다. 지도·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준용 사항 (안 제6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 5. 참고사항

- 가. 조례안 예고: 2025. 11. 11. ~ 11. 19.(8일간) / 의견없음
-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모범운전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조직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울산광역시 중부지부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안전 봉사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안전 캠페인 및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통제 및 보행자 안전 활동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상황 시 구조 및 교통 지원 활동
5.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
2.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제3조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5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모범운전자회와 회원에게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 관 련 법 령

### □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2. 생략

33. “모범운전자”란 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의2(모범운전자연합회)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모범운전자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1호

### 2. 미첨부 사유

- 울산광역시 중구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작성자

- 소 속: 교통과
- 직 급: 지방행정서기
- 성 명: 이승엽
- 연락처: (052)290-3967